

# 제1843호

2021. 12. 2.(목)

발행인 : 영등포구청장  
편집인 : 홍보미디어과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전화 : 02-2670-7561

# 영등포구보

## 규 칙

- 제80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1
- 제806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준비를 위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직무대리규칙 등 5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 3

## 입법예고

- 제2021-193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안 입법예고 ..... 4

## 고 시

- 제2021-240호 도로명주소 부여, 폐지 고시 ..... 7

## 공 고

- 제2021-188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고 ..... 9
- 제2021-1890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 10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영등포구홈페이지<<http://www.ydp.go.kr> (영등포소식→새소식→영등포구보)>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및 편집문의 (☎ 02-2670-7561 / 전송: 02-2670-3581)  
 ◎ 구보발행일은 매주 목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 발행, 공포 등 필요시 발행일 조정 가능)  
 ◎ 구보게재접수는 D-3일(월요일)까지 접수

D-3접수

→

D-2일  
편집 및 교정

→

D-1일  
인쇄 및 제책

→

D일  
보급 및 배포



영등포구 발간등록번호  
3180244-0101-2021

**규 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채 현 일 인  
2021년 12월 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규칙 제80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청소년 업무 소관 국장

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2. 위촉직 위원: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심의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비밀누설 금지)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직무대리규칙 등 5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채 현 일 인  
2021년 12월 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규칙 제806호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직무 대리규칙 등 5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직무 대리규칙 등 5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영등포구직무대리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11조”를 “지방자치법 제124조”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8조”를 “「지방자치법」 제132조”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담당관·과별로, 구의회사무국”을 “담당관·과별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담당관·과장, 구의회사무국장 및”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인계인수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6조”를 “지방자치법 제119조”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1-193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2월 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제정이유**

구청장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공약사항의 확정(안 제4조)
- 라. 이행계획 수립 및 변경(안 제5조~제6조)
- 마. 이행계획 관리(안 제7조)
- 바.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안 제8조)
- 사. 평가단 기능 및 회의(안 제9조)
- 아. 평가결과 환류 및 공개(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참조: 기획예산과,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5층 기획예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과(전화: 02-2670-7543, 팩스: 02-2670-35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안 1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규칙 제 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의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의 공약사항안을 제4조에 따라 확정된 것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이행계획에 따라 추진·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 및 공약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기획 업무 담당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약사항 이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구민, 시민단체, 언론기관 등의 공약사항 이행 검증·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공약사항의 확정) ① 총괄부서의 장은 구청장 취임 후 선거공약자료와 구민의 의견을 토대로 공약사항안을 작성하고 관련 부서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관련부서장은 공약사항을 검토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임기 내 이행 가능성
2. 공약사항 이행의 장애요인 등
3.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예산 확보 방안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은 이를 토대로 취임 100일 이내에 공약사항을 확정한다.

제5조(이행계획 수립)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이 확정되면 공약사항별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각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이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의 이행계획안에는 구체적인 공약사업, 공약사업별 담당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각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제2항의 이행계획안 및 공약사업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조정을 마친 이행계획안 및 공약사업에 관하여, 구청장의 검토 및 공약이행평가단 등 구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공약사항 확정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이행계획 수립을 마치고, 이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이행계획 변경) ① 주관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이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변경 전 구청장의 검토 및 공약이행평가단 등 구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이행계획을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이행계획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이행실적(이하 “이행실적”이라 한다)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이행실적을 제출 받은 후, 필요할 때에는 주관부서와 합동으로 현지 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약사항의 이행이 부진하거나, 부진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공약사항에 대한 성과 평가를 위해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 할 수 있다.

- ② 평가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상 4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 ③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또한,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 ④ 평가단의 단원은 사회적·연령별·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추천을 병행하여 선정한다. 다만, 단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 ⑤ 단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단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⑥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평가단 기능 및 회의) ① 평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공약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 및 건의·자문
- 2. 이행계획 수립·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등
- ② 평가단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제10조(평가결과 환류 및 공개) ① 구청장은 평가단에서 제출한 평가 및 건의·자문 사항 등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약사항 이행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공약사항 이행 현황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연 1회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 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1-240호

**도로명주소 부여,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67 (영등포동7가) 외 15건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2670-3722)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12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도로명주소 부여 조서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이동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738-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35나길 15 (대림동)	2021-12-02	신규부여	2010-05-27	대림로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활용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1081-8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로38길 8-8 (대림동)	2021-12-02	신규부여	2010-05-27	디지털로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활용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1081-8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로38길 8-10 (대림동)	2021-12-02	신규부여	2010-05-27	디지털로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활용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536, 153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흥로19가길 2-4 (신길동)	2021-12-02	신규부여	2010-05-27	신흥로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활용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7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18길 16-1 (양평동4가)	2021-12-02	신규부여	2010-05-27	양평로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활용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684-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34마길 8-1 (대림동)	2021-12-02	신규부여	2010-05-27	대림로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활용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6가 8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30나길 2 (양평동6가)	2021-12-02	신규부여	2010-05-27	양평로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활용	

■ 도로명주소 폐지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고시일	비고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로49길 5-1 (대림동)	2021-11-29	2021-12-02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흥대로187길 9 (대림동)	2021-11-29	2021-12-02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8길 9 (양평동6가)	2021-11-29	2021-12-02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4 (양평동5가)	2021-11-29	2021-12-02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67 (영등포동7가)	2021-11-29	2021-12-02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35길 19 (영등포동6가)	2021-11-29	2021-12-02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35가길 3 (영등포동6가)	2021-11-29	2021-12-02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35가길 1 (영등포동6가)	2021-11-29	2021-12-02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63길 31 (신길동)	2021-11-29	2021-12-02	

**공 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1-188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에 따른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7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의거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공고기간 : 2021. 12. 02.(목) ~ 12. 16.(목)
- 장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123, 영등포구청 주택과 임대사업관리팀
- 이의제기 : 직접방문, 팩스(☎ 02-2670-3631)
- 문 의 : 주택과 임대사업관리팀(☎ 02-2670-3656)
- 공고내용

연번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임대주택 지번주소	위반행위
1	주*연	2016-부평구-임대사업자-23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117-7 (영등포동4가, 스퀘어뷰) 703호	제43조제4항
2	박*규	2020-금천구-임대사업자-19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94-52 (영등포동7가, 루브르씨티) 601호	제43조제2항또는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94-52 (영등포동7가, 루브르씨티) 605호	제43조제2항또는제3항
3	문*호	2016-용산구-임대사업자-6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3-4 (여의도동, 롯데캐슬 아이비) 102-1002호	제43조제4항
4	장*우	2017-영등포구-임대사업자-64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1가 457 (당산동1가, 당산동 신동아 파밀리에아파트) 104동 1204호	제43조제4항
5	이*희	2015-고양시-임대사업자-386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2-3 (여의도동) 927호	제43조제4항
6	엄*화	2018-고성군-임대사업자-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1가 16-1 (당산동1가, 진로아파트) 101동 2305호	제43조제4항
7	(주)플*문	2019-화성시-임대사업자-2079	신길동 600,601	제43조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1-1890호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소유자의 요청에 의해 운행정지명령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3항제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공 고 명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2. 공고기간 : '21. 12. 2. ~ '21. 12. 16.
3. 공고대상 : 16어3435 차량 외 5대

연번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 명	소유자	사용본거지 주소	명령일자	운행정지 명령사유
1	16어3435 (JTHBK1EG7A240 5680)	렉서스 ES350	박재*	경기도 부천시 상오정로**번길 ***, ***호(오정동, 보화아파트)	2021-10-25	소유자 요청
2	16구9478 (KMHGK41HBCU 040442)	에쿠스(EQUUS)	JIN BJ*****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가길 *, (대림동)	2021-10-27	소유자 요청
3	73마2419 (KNHMD376BES5 81876)	그랜드 카니발	PIAO RU*****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길 **, (대림동)	2021-11-02	소유자 요청
4	15도3772 (KMHFC41MP8A2 76280)	그랜저 (GRANDEUR)	이영* 외1인 (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길 **, **/* 신일아르디세 ***호 (문래동*가)	2021-11-03	소유자 요청
5	서울52더9870 (KMHEF31PPVA1 00028)	마르샤2.0 오토매틱	김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길 **, ***호(신길동)	2021-11-03	소유자 요청
6	331저2746 (SCBBR53W08C0 52625)	Continental Flying Spur 6.0	**약품 (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로 ***, ***, 호(대림동, 신라빌딩)	2021-11-12	소유자 요청

#### 4. 공고내용

-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위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를 명하며, 이와 같은 사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됩니다.
-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제7의2호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며, 직권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80조제1호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문 의 처 : 영등포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 ☎ 2670-4282)